

귀환이주와 인간안보:

귀환 중국동포 청소년의 증가와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이진영** 관재석***

| 목 차 |

I. 문제 제기	안정성과 문제점
II.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증가 현황과 원인	IV. 결론: 범주화와 정책적 대안의 마련
III.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불	

| 논문요약 |

이 논문은 급증하고 있는 한국 내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해 귀환이주와 인간안보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인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에서 한국 내 중국동포 청소년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도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는 207,693명에 이르며, 이 중 중국 배경 자녀의 수가 81,951명으로 전체의 약 40%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비자제도의 변경으로 이들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교육과 제도권 이외 교육 모두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 특히 체류자격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에 주어지는 혜택도 받고 있지 못하며, 불안정한 신분에 놓이게 되어 인간안보 측면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정책에서 차세대정책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이민 쟁점의 안보화'의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급증하는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제1저자: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주제어: 귀환이주, 인간안보, 중국동포, 청소년, 재외동포정책

I. 문제 제기

이 논문은 급증하고 있는 한국 내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해 귀환이주와 인간안보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인 차세대 재외동포정책에서 한국 내 중국동포 청소년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2장에서 후술할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70에서 80만에 이르는 한국 내 중국동포 인구 중 청소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급증하는 중국동포 청소년 쟁점을 발굴하여 초보적이거나 다른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이 선행 연구와 구별되는 이 연구의 목적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귀환이주, 인간안보, 중국동포 청소년의 개념을 검토해 보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논문의 구조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귀환이주, 인간안보, 중국동포 청소년의 개념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는 1989년 이전에 한국에서 이민(immigration)이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정주하는 이민(permanent migration)을 의미’하였다(이진영 2012, 185).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지구화가 진행되고 사람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나가는 이민(immigration)’뿐 아니라 ‘들어오는 이민(emigration)’을 포함하면서 이민보다는 ‘이주(migration)’의 개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더스트만 등(Dustman & Weiss 2007)에 따르면, 이주는 경제적 동기에 의한 순수 이주와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으로 나눌 수 있고, 순수 이주는 일시적 이주와 영구적 이주로 세분할 수 있다. 일시적 이주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귀환(return) 계약(contract), 경유(transient), 순환(circulation) 이주가 그것이다. 귀환이주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세계화로 인해 양차 대전 전에 여러 이유로 이산되었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재정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고향인 모국에서 거주국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는 데 그치지 않고(귀환이주), 양국을 오가면서 생활하는(순환이주)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지구화 시대 이주의 한 특징이다. 귀환이주자의 대부분은 부모가 이주했던 거주국에서 출생하거나 교육을 받은 2세대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창호 2012).

지구화 시대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대두이다. 안보의 문제를 국가중심이 아닌 ‘인간에 초점을 두어 접근하는 관점’이 인간안보이다. 전통적으로 안보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한 국가 단위의 개념이다. 그러나 지구화 세계에서 다양한 분쟁 요소가 국가를 넘어 이동하는 개인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라는 생각이 대두하였고, 인간안보의 개념이 나타났다. 즉 변화하는 세계와 사람의 이동이란 이주 현상이 인간안보 개념의 대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1994년 유엔 차원에서 인간안보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간안보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였다.¹⁾ 인간안보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여 평화와 안보, 경제발전 및 복지, 인권존중, 환경보존, 사회정의, 민주화, 군축, 법치, 좋은 정치 등의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었다. 또한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질, 자유와 인권보장 등의 개념도 포함되었다. 지난 20년간 인간안보의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쟁점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²⁾ 중요한 점은 귀환이민자를 비롯한 이주민의 사회적응 권리 등이 인간안보의 한 부분으로 새롭게 규정되면서 이주 및 이주민 쟁점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 것이다.³⁾

- 1) 유엔인간안보위원회(UN Commission of Human Security)가 발표한 인간안보의 개념과 이론 및 실제에 대해서는 Human Security Unit of UN(2009)의 자료를 참조하라.
- 2) 이지영은 한 토론(연세대 미래사회통화연구센터·제주평화연구원 공동학술회의, 2016)에서 인간안보 논의의 발전 양상을 세 단계(공포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문화권리 신장)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국제사회의 실천 노력도 처음에는 대인지뢰 금지(공포)에서 개발원조(ODA)를 비롯한 개발 논의(궁핍)로 이어졌고, 마침내 이주민의 사회적응 권리(문화)로 변모하였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여기에 네 번째 단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5년 발생한 테러와 난민문제로 인간안보 개념이 도전받고 있고, 현재 이주민뿐 아니라 거주국 주민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강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3) 자세한 이주와 연계된 인간안보를 비롯한 안보 쟁점 논의는 이해경 외(2016)의 논의를 참조하라.

중국동포 청소년을 비롯한 재외동포 청소년의 개념도 매우 복잡적이어서 확정하기 어렵다.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 해외 거주자를 재외동포(법적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적동포로 구분)로 규정하는데, 말 그대로 ‘모국인 한국이 아닌 거주국인 재외거주자를 의미’한다. 그 결과 재외동포정책을 집행하는 주무부서도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귀환이주로 인하여 상당수의 재외동포가 이주한 원 거주국이 아닌 귀환한 모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재외동포정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의 개념도 국가마다 개념이 다르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관련 법령은 물론 근로기준법 등 연관 법률에서 각기 그 정의가 다르다.⁴⁾

이 연구에서는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개념을 ‘중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9세에서 24세까지의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자’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왜냐하면 모국과 원 거주국을 넘나들면서 이동하는 중국동포들의 현 귀환이주 특성과 재외동포정책 변화로 인해 최근 중국동포 청소년의 한국 입국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귀환이주와 인간안보라는 시각에서 중국동포 청소년 쟁점을 접근하는 초보적 연구에 해당한다.

2. 선행 연구와 논문의 구조

귀환이주에 대한 한국 내 연구는 초기 단계로 그 수가 많지 않다.⁵⁾ ‘귀환이주’ 자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은 재외동포, 화교 및 화인, 혹은 기타 외국인 이주자에 중점을 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재외동포 귀환이주민을 다룬 연구는 공동체 형성에 주목한 윤인진·김희상(2016), 귀환이주 고려인 임금노동자를 연구한 임채완·선봉규(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대구지역 귀환이주를 다룬 이은정(2015) 등의 논의가 있다. 또한 한국화교의 중국으로의 귀환이주를 다룬 이창호(2012), 화교 및 화인의 중국 귀환

4)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9-24세까지로, 민법 제4조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김경준·김태기 2015, 15-16).

5) 해외의 연구 중 최근의 것은 츠다(Tsuda 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모국의 우대적 비자정책 등으로 인한 유인 요인이 귀환이주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주를 다룬 김혜련·임채완(2015), 한국에 거주했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귀환이주를 다룬 김나경·임채완(2015), 결혼이주 여성의 귀환이주를 연구한 김현미(2012)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는 재외동포 이외 다른 집단을 다룬 연구이다.

물론 귀환이주의 관점이 아닌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다.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재외동포 집거지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를 비롯한 연구와 함께⁶⁾ 초국가적 이동과 정체성 등 구체적 주제로 접근하고 있다.⁷⁾ 또한 중국동포뿐 아니라 구소련 지역에서 귀환한 고려인에 대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⁸⁾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는데, 미래인재개발의 측면에서 분석한다든지(조혜영·문경숙 2007; 김경준·김태기 2015), 다른 국가의 재외동포 청소년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이진영 외 2015)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중국동포 청소년의 귀환이주를 다룬 선행 연구는 사실상 없다. 주로 부모의 한국으로의 귀환이주에 따라 ‘중국 내 남겨진(留守)’ 아동 청소년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연구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⁹⁾

선행 연구 중 다른 한 분야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다.¹⁰⁾ 중도입국 청소년

-
- 6) 가장 최근 연구인 윤인진·김희상(2016)의 선행 연구 분석에 따르면, 방성훈·김수현(2012), 윤진희 외(2014), 이석준·김경민(2014) 등의 논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양한순 외(2013)의 논의 등이 있다.
- 7) 최근의 대표적 연구로는 리화(2014), 이춘호(2014), 방미화(2013), 우명숙·이나영(2013), 이정은(2012) 등의 연구가 있다.
- 8) 귀환이주 고려인은 경기도 안산, 광주 광산구, 경남 김해, 경기 김포 등에 집중되어 거주한다. 안산에는 ‘고려인문화센터’ 및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고려인 지원센터 너머’(김승력, 김영숙)가, 광주에는 ‘광주고려인마을’(이천영, 신조아)이, 비교적 최근 활동을 시작한 김해에는 ‘구소련 친구들’(황원선, 보리스 리), 그리고 김포에는 ‘고려인공동체’(리 발레리아) 등의 고려인 관련 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들에 대한 선행 연구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 9) 이진영·박금혜(李振翎·朴金海 2014), 한상돈(2013), 김명숙 외(2012), 윤명숙 외(2012), 정혜원 외(2011) 등의 연구는 부모의 한국 이주에 따른 중국조선족 결혼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 특성이나 학교적응, 정부 차원의 대책 등에 집중하고 있다.
- 10) 손영화·박봉수(2015)의 논의에 따르면 명칭이 연구자마다 달라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재분 외(2009)는 ‘중간 입국 이주 청소년’, 설동훈 외(2010)는 ‘중도입국 자녀’, 정상환 외(2010), 김명정(2011)은 ‘동반·중도입국 자녀’, 류방란 외(2011)는 ‘외

년은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출신국 현지 남성의 사이에서 출생하여 한국인 남성과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한국으로 동반(또는 추후) 입국한 자녀와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들 중 출신국에서 출생한 후 입국한 자녀들’로 정의된다(오성배 외 2013, 9). 위 정의에 근거하여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에 해당하려면, 기혼 중국동포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거나 혹은 이주노동자로서의 중국동포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주장에 따르면(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2017, 81), “최근 중도입국자녀의 80% 이상이 중국동포자녀”라고는 하나 중국동포 청소년에게 초점을 둔 연구는 극소수를 제외하곤(김관준 2016; 김아름 외 2013; 박봉수 외 2013) 사실상 거의 없다.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 재단인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있으나, 주로 탈북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에 초점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즉 중국동포 청소년에 특화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청소년 문제가 귀환이주 및 인간안보와 연관되는가?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급속한 증가와 적절한 정책의 부재는 이민자인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인간안보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인간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즉 재외동포정책 차원에서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잠재적 사회 갈등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며, 결국 한국의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영향을 주어 ‘이민의 안보화’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이 동포와 외국인 사이에 위치하여 모호한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된다면(이정은 2012), 한국에서 가장 큰 이주 외국인 집단인 중국인 사회로의 포함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차원의 국제적 안보 쟁점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귀환이주 재외동포의 현황과 함께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증가 현황을 여러 통계를 통해 제시하여 범주화하고 증가의 원인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인구를 추산해 본다. 또한 제3장에서는 이들을 수용하는 한국의 제도적 현황을 고찰

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 장명선 외(2011)는 ‘중도입국 자녀’, 오성배·서덕희(2012)는 ‘중도입국 청소년’ 등으로 호칭한다. 최근에는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한 후 이들을 적절하게 수용하여 통합할 수 없는 불안정성과 문제점을 짚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겸한 제4장에서는 재외동포정책 차원에서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언급하고 귀환이주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대안을 초보적이거나 제시하려 한다.

이 논문은 여러 면에서 특색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이주, 재외동포, 청소년 등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각 쟁점이 아직 사회적 주목을 크게 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귀환이주와 인간안보 개념을 사용하여 중국동포 청소년 문제를 접근한 것이다. 특히 귀환이주 재외동포에 대한 연구도 초보적인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것은 이 문제가 가지는 정책적 사회적 시급성을 부각시키려 한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 혹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후속 연구는 좀 더 중국동포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는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는 기초적 연구이며, 추후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이며 참여 관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증가 현황과 원인

1. 한국 거주 중국동포 체류 현황과 특색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6년 10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인 2,025,485명이며, 외국국적 동포는 774,345명으로 체류 외국인 대비 38.2%를 차지하고 있다.¹¹⁾ 즉 외국인이라 하나 한국인과 혈연적 뿌리를 같이하는 재외동포가 전체 외국인 체류자 10명 중 4명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비자에 의한 체류 자격별로 살펴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1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2017년 2월 3일 검색)

하 재외동포법)에 근거하여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364,38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및 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허용되는 방문취업(H-2)비자가 262,306명, 영주(F-5) 85,898명, 그리고 방문·동거(F-1) 25,696명 순이다.¹²⁾ 국적별로는 중국(이하 중국동포로 칭함)이 653,730명으로 84.3%를 차지하여 사실상 한국 체류 재외동포의 대다수를 형성하고, 미국 46,264명(6.0%), 캐나다 15,852명(2.0%) 등의 순서로 분포하고 있다(<표 1>).

<표 1> 연도별 중국동포 체류 규모 비교¹³⁾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0
외국인	1,445,103	1,797,618	1,797,618	1,899,519	2,025,485
중국동포	447,877	497,989	590,856	626,655	653,730

또 다른 정부 통계인 행정자치부의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694,256명에 이른다.¹⁴⁾ 이들의 한국 내 분포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262,545명, 경기 269,078명, 인천시 32,780명 등 수도권 지역에 전체의 80%가 넘는 564,403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류 유형별 분류를 보면, 한국 국적 취득자가 73,998명, 고용허가제(E-9)와 방문취업(H-2)이 268,558명, 결혼이민자가 24,039명, 유학생이 658명, 재외동포(F4)가 206,047명, 중국동포의 동거 자녀가 39,160명, 기타 81,796명으로 나타난다.

법무부와 행자부 통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조사 시기 및 숫자 그리고 포함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행자부 통계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민이 된 국적취득자 73,998명을 중국동포 거주자로 포함시키고 있다. 즉 외국인이 아닌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의 유사성과 중국국적 동포와의 연관 관계로 통계에 포함되는 것이다.

12) 비자제도에 근거한 체류자격 관련 논의는 이해경 외(2016)의 논의를 참조하라.

13) 표의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자료를 취합하여 재구성하였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2017년 2월 3일 검색)

14)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통계를 참조하라. 지방자치단체 중 읍면동까지 거주 통계를 보여준다.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2017년 2월 3일 검색)

어떤 통계를 취하든,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출신을 포함하여)의 수는 적게는 65만부터 많게는 70만에 이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한국 내 외국인 체류 및 거주자 중 단일그룹으로는 가장 큰 집단이며, 한국 거주 재외동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외국인 거주자 중 절반을 상회하는 중국 국적자(중국동포는 물론 한족 등 중국인) 중에서도 사실상 중국동포(중국 용어로 조선족)가 60-70%를 이루는 가장 큰 집단이다.¹⁵⁾ 2010년 실시된 중국의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조선족(중국동포) 인구는 183만 명에 이른다.¹⁶⁾ 이는 2000년 센서스에 비하면 약 10만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한 부분은 해외에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중국동포 중 한국 국적취득자가 7만에서 9만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절한 통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183만 명의 조선족 인구 중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가 이미 전체의 4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인구로 본다면 그 비율은 60% 이상이 된다는 점이다. 즉 중국동포는 더 이상 중국에만 거주하는 조선족이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귀환이주의 성격을 가진 집단’인 것이다.

한국 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큰 집단이고, 재외동포 중 가장 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귀환이주 중국동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명확하지 않다. 재외동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물론 외교부이지만, 정책 대상과 주관 업무는 ‘해외(재외)’ 거주 동포이지 국내 거주 동포가 아니다. 재외동포들은 재외동포법에 의해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보듯이 중국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자 및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출입국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⁷⁾ 그러나 미국 등 다른 지역 동포들과는 상이한 비자와 체류 자격으로 인한 실제적 효과는 국내 노동시장과 담당부서에 나타나고 있다. 즉 고용허가제(E9)의 특례라 할 방문취업제(H2) 비자 및 체

15) 2017년 1월 발표된 『통계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자는 2,013,779명으로 200만 이 조금 넘고, 이 중 중국 국적자는 1,022,637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동포(한국계 중국인)는 630,110명으로 전체 중국 국적자 중 60%를 차지한다. 한국 국적 취득자를 포함하면 70만이 넘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2017년 2월 3일 검색)

16)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2017년 2월 3일 검색)

17) 재외동포정책과 관련된 모순에 대해서는 이진영(2011)의 논의를 참조하라.

류 자격을 지닌 중국동포의 일부는 외국인근로자로 분류되어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¹⁸⁾ 또한, 결혼이민자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는 한국 국민 혹은 준(準)국민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와 연관되어 여성가족부의 관할에 놓여 있다. 물론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동포는 주로 서울 서남권과 수도권에 80%가 집중되어 있어 행자부와 각급 지자체의 관할에 연관되어 있다. 즉 단일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정부 내에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2016년 통계에서 체류 자격별로 보면 단순노무 취업은 제한되나, 사실상 계속 갱신 및 연기가 가능한 재외동포비자(F-4)가 가장 다수를 차지한다. 단순노무 및 일부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방문취업비자(H-2)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주자격(F-5)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국민이 될 결혼이민비자(F-6)와 한국 국적 취득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어 있는 한국 내 중국동포는 사실상 귀환이주를 넘어 ‘이민자의 정주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관준 2014).

2.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현황과 증가

그렇다면 정주화하고 있는 귀환이주 중국동포에서 청소년의 경우는 어떠한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9-24세에 해당하는 이민배경 자녀 6만 6천여 명 중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소위 중도입국 자녀는 26.9%인 약 1만 7천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18-24세 후기 청소년 연령대에서 중도입국 자녀 비율이 월등히 높아 53.6%를 차지하였다(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포럼 2013, 46). 2015년도 행정자치부의 조사를 보면,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는 207,693명이고, 이 중 중국배경 자녀의 수는 81,951명이다. 빠르게 그 수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동포 청소년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도입국하는 중국동포 청소년 중 18세 이하의 행자부 2015년 통계를 보면 모두 39,160명이다. 이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표 2>와 같다.

18) 자세한 사항은 이해경 외(2016)의 논의를 참조하라.

<표 2> 재한 중국동포 자녀의 연령별 통계 현황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만 7세	만 8세
1,651	1,757	2,221	2,203	2,376	2,392	2,615	2,972	2,340
만 9세	만10세	만11세	만12세	만13세	만14세	만15세	만16세	만17세
2,306	2,141	1,881	1,851	1,724	1,944	2,022	1,885	1,689

▪ 행정자치부(2015)

즉, 미성년자라 할 18세 이하의 중국동포 청소년과, 중국동포 배경 이민자의 성년 자녀를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수는 5만 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의 근거는 세 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한국 내 중국동포에 대한 체류자격 통계의 혼선, 명확한 통계가 어려운 점, 이주민의 특성상 그리고 한중간의 가까운 거리에 의한 출입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¹⁹⁾

중국동포 청소년의 발생은 부 혹은 모의 한국 체류로 인해 동반 거주하거나(외국 국적 동포), 혹은 부 혹은 모가 한국 국적자와 결혼으로 인한 출생(국민), 재혼으로 (중도입국하여) 한국에 거주하게 된 경우(국민 혹은 중국인) 등 다양하다.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부모 모두 중국 국적이 7,360명,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경우가 30,039명, 부모 모두 한국 국적자가 1,761명이다(김관준 2016, 41).

이런 복잡한 체류 유형이 발생하게 된 것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의 혼선 때문이다. 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으로 일반외국인과 구별되는 차별적 지위를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재외동포비자(F4)가 신설되었다.²⁰⁾ 그 결과,

19) 전체 중도입국 자녀 통계에서 중국동포 자녀의 통계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고, 외국인 주민 통계에서 중국동포 자녀는 다문화가정 자녀이며, C-3-8 단기사증 발급자 중 어느 정도가 장기로 체류 변경을 하는지를 파악하여 분석해야만 정확한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인구에 대한 통계가 나온다는 익명의 심사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감사를 표한다.

20) 재외동포(F-4) 체류 자격 소지자가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2017년 2월 3일 검색)

재외동포들은 외국인들이 최장 5년간 체류하는 것과 달리 사실상 영구체류가 국내에서 가능해졌다. 하지만 과거 국적주의에 따라 직계존속 3대 중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는 경우만 재외동포로 정의하였고, 중국동포는 국내에 들어와 영구히 체류하며 국내의 노동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처음에 제외시켰다. 즉 재외동포 중 이주시기가 오랜 중국동포와 고려인은 재외동포비자에서 제외되었다. 2002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개념상 중국동포도 포함되었지만, 취업활동 제한에서 단순노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결국 재외동포 비자의 전면적 실시는 유보된 것이다. 그 결과, 중국동포의 경우 다른 지역 재외동포와는 다른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동포의 한국으로의 입국 문호는 점차 넓어져 갔다.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과 2009년부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소명 가능한 동포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재외동포 자격(F-4)이 부여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물론, 중국동포 청소년의 경우도 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다양한 지침과 한시적 조치로 인해 입국자 수가 증가한 것인데, 대표적인 조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가장 중요한 조치는 2013년 9월 1일부터 만60세 이상 모든 외국국적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만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허용하였다.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등의 업태에 근무하는 자의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발급한 것이다. 또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 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였던 규정을 확대하여, 그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를 허용한 것이다. 방문취업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기존에 단기 방문비자를 발급받고 입국 후 국내에서 체류 자격변경을 해야 했으나, 조치의 결과 재외공관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21)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법무부가 추진한 재외동포정책의 주요 내용은 광재석(2017, 61)의 논의를 참조하라.

방문동거(F-1, 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내에 체류하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부모의 체류 기간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런 조치로 한국 체류 중국동포의 증가는 물론, 귀환중국동포 청소년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특히 2016년 4월 4일 열린 국무총리실 주재 외국 인정책위원회에서 “동포 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 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중국동포의 입국 문호가 일반 재외동포에 준하는 자유로운 왕래에 버금가는 범위로 더욱 넓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확대조치가 중국동포 청소년에게 적용된 것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중국동포 청소년 대상 완화된 출입국 체류 조치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2012	장기체류동포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에게 단기복수사증(1년) 발급 확대	재외동포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방문동거(F1) 부여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거주자격 부여
2013	유학자격자의 부모 및 배우자의 방문취업 초청 자격 완화	
2014		재외동포 배우자 및 미성년자가 동포가 아니더라도 방문동거(F1) 부여
2015	방문취업 미성년 자녀 재학 중인 경우 부모 만기되어도 체류연장 가능	부모가 재외동포로 3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자녀는 25세까지 체류 허가
2016	국내 체류하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부모체류 기간까지 체류 허용	

이렇게 완화된 출입국 및 체류조치의 결과, 중국동포 청소년의 한국으로의 입국은 급격하게 증가한다. <표 4>는 2012년에 발급 확대가 결정된 단기복수사증(1년)의 2014년 발급 현황을 보여준다. 24세 이하의 성년 청소년에 대한 단기사증(C-3-8) 발급이 2014년 한 해 14,110건 이루어졌고, 이는 중국동포 청소년 입국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들은 사실상 바로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연령대이다.

<표 4> 2014년 중국동포 청소년 단기사증(C-3-8) 발급 현황

비자	성별	20세	21세	22세	23세
C-3-8	남	1,631	1,748	1,882	1,980
	여	1,717	1,685	1,738	1,729
합계		3,348	3,433	3,620	3,709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내부 통계자료)

또한 <표 5>는 체류자격별 중국동포의 입국 현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결혼이민, 관광취업, 방문취업의 경우 그 수가 그리 증가하지는 않으나,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영주(F5) 비자 자격을 부여받은 중국동포의 경우 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3>의 여러 확대조치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표 5> 체류자격별 중국동포 추정 비교(2014-2016년)

	방문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영주 F5	결혼이민 F6	기타 G1	관광취 업 H1	방문취업 H2
2014	59,657	38,968	20,015	103,173	117,597	7,152	1,448	240,084
2015	70,620	37,545	21,444	115,142	118,070	9,565	1,516	280,988
2016	86,297	39,129	22,195	124,986	118,790	14,421	1,541	275,570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6, 내부 통계자료)

앞서 언급한 대로,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 청소년의 개념이 중국과 한국이 다르며, 소위 중도입국 자녀 중 많은 부분이 한국으로 귀화한 국민의 자녀이고, 중국 배경일 경우의 국적도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물론 유아기 및 학령기, 청년기 등으로 연령 분포의 차이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귀환이주하여 제도교육에 포함되었는가 하는 점도 관찰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동포 체류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이민자의 특성으로 인한 빈번한 출입국과 한국의 잦은 비자정책의 변화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체류 현황을 확정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가령 특정

비자로 입국한 후,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추적이 힘들다. 매년 변화하는 비자정책과 기본 통계의 부정확함으로 연관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확한 통계 부족 현상 그 자체가 한국 이민 및 다문화정책의 하나의 큰 문제점이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최근 5년간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3.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유형화와 현황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유형화는 연령별, 제도교육 편입별, 그리고 취업유무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중국동포 4만 3890명 가운데 취학 연령대인 만 7-18세 청소년 수는 2만 6299명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교육부 조사 결과 2015년 4월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국동포 학생 수는 9,215명에 불과하다. 부족한 통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별로 한국 거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정 시점(가령 2016년 12월)의 연령대별로 나누어 본다면, 취학청소년, 미취학청소년, 혹은 성년으로 기술교육 대상이 되는 청소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물론 한 해가 지나면, 취학 혹은 미취학에서 기술교육 대상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또한 각각의 그룹별로 현황과 문제점은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취학 및 미취학 중국동포 청소년은 다문화 교육과 연관되어 교육부 관할 사항이다. 2015년 교육부통계에 따르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배경 학생 수는 82,536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1.36%를 차지한다. 2015년도 행정자치부 조사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자녀는 207,693명에 이른다.²²⁾ 물론, 위에 언급한 대로 중국배경 자녀의 수가 81,951명으로 전체의 약 40%에 육박하고 있어, 한국 거주 중국인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과 관련한 한 통계를 보면,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 중 10대에

22) 외국인·다문화 가정 자녀는 2007년 44,258명, 2009년 107,689명, 2011년 151,154명, 2013년 191,328명, 2015년 207,69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서 25.5%가 취업을 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방문취업(H-2)은 78.5%, 재외동포(F-4)는 56.6%, 영주자(F-5)는 59.8%가 취업 중이다. 물론 청소년에 포함이 안 되는 20대 후반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 통계에서 중요한 점은 20대의 경우 취업률이 전체 동포 취업률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교에 재학 중일 수도 있으나, 비자의 성격상 취업이 안 된 경우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6> 동포 및 영주자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2015년	10대	20대	전체
방문취업(H-2)		78.5%	81.4%
재외동포(F-4)	25.5%	56.6%	59.7%
영주자(F-5)		59.8%	73.9%

▪ 이규용(2017, 51)

중국 인구조사에서도 한국으로 귀환이주하는 중국동포 청소년의 인구 역시 추정 가능하다. 만 24세 이하는 한국에서 기술교육 대상이다. 이들은 기술교육을 받으면, 방문취업 비자(H-2)의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4년 중국 정부 통계를 보면, 만 20세에서 24세 이하의 조선족은 157,015명이다. 초중(한국의 중학교) 졸업 이후라 할 15세 이상 19세 이하는 85,419명에 이르고 있다(<표 7> 참조).

2014년 현재, 약 25만 명에 이르는 15세 이상 24세 미만의 중국동포 청소년 중 한국으로 귀환하여 거주하는 자의 숫자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위의 여러 표 및 한국 정부의 여러 통계로 추산해 보면, 최하 2만 5천 명의 중국동포 청소년이 귀환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의 비자 완화 조치로 그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5만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전술하였듯이 한국의 비자정책의 복잡성으로, 그리고 정확한 통계의 미비로 근사치조차 확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국민으로 귀화한 자, 다문화가정 자녀, 기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중국동포 청소년의 범주로 넓히면 더욱 확정이 어렵다. 새로 청소년이 되는 연령과 24세를 벗어나면서 혹은 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 추적은 더욱 어렵다.

물론, 24세 이하 중국동포 차세대 청소년의 대다수는 중국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이들의 실태를 파악한 연구도 없다. 중요한 점은 중국 내 낮은 청년 취업률로 한국이 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들의 인구가 증가할 잠재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표 7> 기술교육 대상 중국동포(조선족) 연령별 인구분포²³⁾

연령	전체			조선족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연령 15-19	99889114	51904830	47984284	85419	42696	42723
15	18024484	9524898	8499586	12822	6488	6334
16	18790521	9795181	8995340	14572	7372	7200
17	20775369	10760828	10014541	16383	8172	8211
18	20755274	10744556	10010718	18867	9426	9441
19	21543466	11079367	10464099	22775	11238	11537
연령 20-24	127412518	64008573	63403945	157015	78947	78068
20	28026954	14201091	13825863	29158	14523	14635
21	26556649	13357755	13198894	30570	15282	15288
22	24474192	12281148	12193044	31655	15844	15811
23	25695955	12876542	12819413	33190	16903	16287
24	22658768	11292037	11366731	32442	16395	16047

Ⅲ.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불안정성과 문제점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불안정성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체류 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범주화되어 있지 않고 통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미 고찰하였다. 불안정성을 초래

23)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2017년 2월 3일 검색)

하는 다른 측면은 명확하지 않은 비자정책, 즉 체류 자격이다. 또한 일반 이민자와는 달리 아직 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대인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도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불안정성이 이민자의 인간안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안정한 이들의 인간안보 상황은 한국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이 되고, ‘이민의 안보화’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가장 대표적인 불안정성 요인은 완화되고 있는 비자정책에도 불구하고,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경우 체류자격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위에서 고찰한 대로, 온전한 재외동포 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의 방문 동거나 연수 혹은 방문취업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체류 자격은 취업 혹은 취학에도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자격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어정쩡한 체류 자격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중도입국 중국동포 청소년의 경우 한국 장기체류 및 취업지원 등의 다문화지원 등의 수혜가 불가능한 단기 동포비자(C-3-8)를 발급받는다. 이 비자는 한국의 정규학교 재학이나 온전한 취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비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단기 속성으로 국가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재외동포 자격(F-4) 변경이 유일한 탈출구이다. 즉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여러 차례 하면서, 사설 학원을 통하여 국가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인 것이다. 혹은 방문취업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불법취업을 할 수밖에 없다. 현재 재외동포비자(F-4)로의 자격 변경을 위한 교육은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한정된 일부 차세대 청소년들에게만 가능한 대안이다.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차세대의 경우는 다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중국동포들의 이주와 재이주로 인하여 중국 내에서 민족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떨어져 살다 보니 중국어만 하는 청소년이 많은 탓이다(윤명숙 외 2012).

한국어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국동포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 학습

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야 하나, 단기체류자격으로 인해 현재로써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무료 한국어 수업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즉, 국가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 다문화 청소년, 북한이탈 청소년 등을 위한 사회적응 및 취업·진로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예산과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하였고, 비록 한계가 있지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반해, 재외동포이자 가장 큰 한국 내 이주민 집단인 중국동포 청소년에게는 참여가 불가능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입국 이후 안정적인 체류자격인 재외동포(F-4)로의 자격 변경을 원하고 있으나 부모의 이주 등으로 중국에서 민족학교가 아닌 한족 학교에서 수학한 이들 청소년들이 빠른 시간에 한국어 학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결과, 한국 조기정착 의지가 강한 일부 청소년들이 개인적 비용으로 사설학원 등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안정된 체류 자격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F-4 변경을 위해서 고비용의 학원수강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또한 3개월 단기체류 자격으로 인해 학습 중에 부득이 일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국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문화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재외동포법에서 보장받는 재외동포로서의 권리 역시 제한받고 있다. 가장 큰 이주민 집단이자 재외동포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체류가 불안정한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그들의 중도입국과 동기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부적응을 겪고 있으며, 일반 내국인 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정체성 혼란 등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응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박봉수 외 2013). 그 결과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형성되어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 한 이후 감내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상의 불안정한 체류신분과 이로 인한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즉 취업 및 진로의 문제, 한국어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문화적 충돌, 불안정한 가족관계 등의 애로사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한국어 습득, 진로 개척 및 취업능력 향상 등의 자기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2. 교육 기회의 불안정성

그러나 이들의 한국 교육체계 내 진입과 적응도 순조롭지 않다. 이민자 일반이 겪는 문제점인 부모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가정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출생하여 중국 공교육 체계에서 성장한 후 한국에 입국한 학생들이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한국의 공교육 체계에서 이들을 수용하는 것 역시 불안정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의 현상이고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대책 역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령대별로 세분화되면서 그 어려움은 더하다. 비교적 어린 시절에 한국으로 들어온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은 물론 학습 능력에서도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한국에 들어 온 청소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적으로 이들을 수용하는 것은 일반 학교 이외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학급의 운영 등을 통한 것이다. <표 8>은 정부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이민배경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학령기 자녀 대상으로는 다문화 학생 대상의 대안학교가 2015년에 4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중도입국 자녀 대상으로는 교육부 주도의 100여 개의 다문화 예비학교, 여가부 주도의 레인보우스쿨 등 7개소가 있다. 물론 법무부나 여가부의 단기간의 적응 프로그램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중국동포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중국동포를 일부 포함시켜 운영할 뿐이다.

김관준(2014, 47-49)은 380명의 재학생 중 절반이 중국동포 자녀인 서울 구로구 영일초등학교의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일반 한국 공교육체계 내에서의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포라는 특수성에도 초점을 두고, 중국도 고려하는 ‘문화소통 세계시민 양성’을 주장한다. 이는 귀환이주한 중국동포들의 정주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잠재적 한국민으로의 국민교육뿐 아니라,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이중 언어와 한국의 사회적 환경 등 새롭게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 혹은 청소년의 출생지인 중국 동북3성이나 중국과의 연결을 통한 교육이다. 즉 한국 지역사회의 제도권 학교들이 국제협력도 하면서 중국동포 청소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표 8> 정부 부처별 이민배경 자녀 지원정책 현황

대상	사업명	내용	소관부서
미취학 및 저학년	다문화유치원	다문화 유아의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다문화 유치원 운영(15년 30개원 시범운영)	교육부
	언어발달 서비스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언어발달 정도 진단 및 언어교육 실시(언어발달지도사 2015년 300명)	여가부
	방문교육 (자녀생활 서비스)	학업성취가 낮고 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독서, 숙제지도 등 생활지원(2015년 216개소)	여가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이중언어로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이중언어교실 등 운영(2015년 217개소)	여가부
학령기 자녀	대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기초학력 증진 강화 학교, 공공기관 등 방문(2015년 5,288명 지원)	교육부
	대안학교	다문화 학생 대상 대안학교 운영(2015년 4개교) 고교: 서울 다솜학교, 폴리텍다솜학교 초등: 지구촌 학교 초중고 통합: 한누리학교	교육부 고용부
	글로벌 브릿지	다양한 분야(수학, 과학, 언어, 글로벌 리더십, 예체능)에 잠재력을 지닌 자녀를 인재로 육성(2015년 17개교)	교육부
중도입국 자녀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 운영(2015년 100개교)	교육부
	레인보우스쿨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 특기적성 교육 등(2015년 17개소)	여가부
	무지개Job아라	진로캠프, 인턴십 및 멘토링, 진로탐색 과정 운영 등 단계별 진로지원 프로그램 제공(2015년 6개소)	여가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중도입국 자녀에게 외국인 등록 시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진로정보 제공(2015년 23개 기관)	법무부
일반 가정 자녀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2015년 23개교)	여가부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이해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2015년 150개교)	교육부

▪ 여성가족부(2016)

그러나 공교육 진입을 위한 100여 곳의 다문화 예비학교가 각 지방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표 9>),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동포 청소년들에게 제도적 교육기회는 여전히 어렵다. 물론 이 예비학교들도 중국동포가 주 교육 대상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런 점은 중국동포의 체류 현실과 한국 학교 교육 제도의 괴리라 할 수 있다.²⁴⁾ 중국동포가 다수인 거주환경과 이들을 공교육 등 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서 실제적 제도화의 방향과 현실은 상이하기 때문이다.

<표 9> 2015년 다문화 예비학교 시도별 운영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9	4	3	4	1	5	5	1	26	8	5	5	7	6	5	5	1	100

• 교육부(2015)

3. 사회문화적 부적응과 불안정성

앞서 언급한 대로 다문화 과정을 운영하는 시범학교의 수는 많지 않다. 부모의 거주지가 학교와 먼 경우 취학도 어렵다. 입학하여도 학교에 부적응하고 또래와 사회에서 소외되기도 쉽다. 제도권 교육 밖의 중국동포 청소년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취업한 경우에도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의 하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나아가 국가 및 민족 정체성의 형성 시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한국사회에도 위기이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공동체로부터의 이탈 및 소외 문제가 이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민의 안보화’ 이슈가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

24) 전교생 535명 중 약 35%인 187명이 중국동포인 대림동 대동초등학교는 ‘숨은 중국동포’까지 포함하면 중국동포 비율이 70-80%에 육박한다고 한다(『헤럴드경제』 2015/03/11). ‘꿈나라반’이라는 다문화 예비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규정상 15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희망자를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정규 수업시간에 특별반을 만들어 운영하는 변칙을 사용하고 있다(『노컷뉴스』 2015/04/28).

기 때문이다.²⁵⁾ 특히 제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 19-24세 연령대의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중국동포 차세대들의 입국 및 체류 규모가 증가하는데, 이들이 적절한 적응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2015년 4월 기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중국동포 학생 수는 9,215명에 불과하다. 제도 밖의 중국동포 청소년은 최대 4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만 19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중국동포는 한국에 들어와서 90일 이상 체류를 할 수 없으며, 아르바이트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물론 법무부가 고시한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해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이들과 부모들이 갖는 최대 관심 사항이다. 정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중국보다는 한국이 현재 중국동포 가족들의 중심 지역이 되는 현실’에서 자녀의 성공적 정착과 한국 사회에의 적응은 중국동포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니 여러 번칙이 나타나면서 이들의 한국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동포 차세대들, 특히 C-3-8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이들에 대한 연구자의 불안정한 조사에 의하면, ① 대부분이 중국에서도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결국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다는 점, ② 한국에서 부모들이 보내준 돈으로 생활을 하며 부모세대와는 달리 돈 씹씹이가 헤픈 성향이 있다는 점, ③ 정체성과 세계관의 결여가 심각하고, ④ PC게임 등에 중독된 비정상적인 생활습관에 빠져 있으며, ⑤ 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의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²⁶⁾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부모세대들 역시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부모의 나이대를 보면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중반으로 한국에 와서도 한창 일을 해야 할 나이이고, 자녀들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생활을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의사소통과 교감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돈만 벌어서면 만족해하고, 부모는 자식이 큰 속 안 썩이고 지내는 것만으로 만족해

25) 이민의 안보화 논의는 이해경 외(2016)의 논의를 참조하라. 잠재적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요소 및 사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26) 공저자 광재석은 2015년 11월부터 중국동포 청소년 전문 대안학교 ‘한중사랑학교’를 운영하면서 면담 관찰하였다(『연합뉴스』 2015/11/06).

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혼가정이 상대적으로 많아 자녀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것도 중요하다(리화 2014; 박봉수 외 2013).

이런 불안정성은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 역시 높인다. 중국동포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개별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간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청소년 범죄 중 많은 부분이 중국동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유형과 추세를 알아볼 수 있다.

<표 10> 연간 외국인 청소년 범죄 증가 현황

범죄유형	세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강력범죄	소계	8	11	10	10
	살인(기수)	-	-	-	-
	살인(미수)	-	1	-	4
	강도	7	6	3	1
	강간·강제추행	1	4	7	5
	방화	-	-	-	-
절도범죄		40	48	46	50
폭력범죄	소계	59	69	87	81
	상해	8	11	7	10
	폭행	7	11	25	20
	체포감금	-	-	1	-
	협박	-	-	1	-
	약취유인	-	-	-	-
	폭력행위	42	40	46	45
	공갈	-	4	1	-
기타	손괴	2	4	3	6
	지능범죄	21	18	23	48
	풍속범죄	-	3	-	1
	특별경제범죄	10	1	6	13
	교통범죄	13	21	25	31

한국에서 이민자 범죄는 외국인 범죄로 통칭되어 불리고 있다. 외국인 범죄라는 정의는 이민자가 가진 특수한 환경, 즉 출입국과 체류와 관련한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와 연관된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이민자 범죄는 많은 부분이 출입국 및 체류와 연관되어 있다. 입국 관련 서류의 위변조,

부정 취득과 사용, 취업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이 여권이나 사증을 위조하거나 사진 교체, 심사 인위 변조, 타인 명의의 여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출입국과 관련된 이민자 범죄이며, 여기에서 촉발된 다른 일반 범죄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민자 범죄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연간 외국인 청소년 범죄의 추이는 <표 10>과 같다. 전체 외국인 범죄 중 청소년 범죄는 대략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강력 범죄보다는 주로 폭력이나 절도 등이 많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들의 범죄에서 지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연관되고, 점차 조직화되고, 마약 등 기타 범죄와 연관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⁷⁾ 이는 한국 사회에 부적응하는 중국동포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IV. 결론: 범주화와 정책적 대안의 마련

이주민의 인간안보는 이주과정과 이주 후 수용국에서의 인간안보 쟁점으로 나뉜다. 밀입국과 인신매매 등은 이주과정 중 인간안보 쟁점이다. 그러나 이민정책이 출입국과 체류 그리고 국적문제 등 전통적 이민정책을 넘어, 사회통합정책으로 확대되면서 수용국에서의 인간안보 쟁점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인과 동등한 시민적 권리의 보장, 차별시정,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에게는 단속 및 보호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방지, 이주민 자녀의 교육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물론 임금 체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 과한 노동시간 등에 의한 기본적 인권 침해, 가족결합권의 불인정 등도 포함된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국가차원의 합법적 신분제도가 없기에 아동으로서의 교육받을 권리나 기타 권리가 위축되는 인간 안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귀환이주 재외동포와 중국동포 청소년의 경우, 2장과 3장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쟁점들이 이주민의 인간안보와 연관된다.

27) 미성년자인 중국동포 3세가 개입된 보이스피싱 범죄 보도는 종종 발견된다(『한국일보』 2016/03/29; 『컨슈머타임스』 2015/02/01).

중요한 점은 한 국가 내에서 인간안보 쟁점이 선순환적 해결이 안 될 경우 이민자의 정치화에 따른 급격한 이민의 안보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의 인간안보를 넘어, 국가 및 사회의 안보문제화될 개연성이 커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간안보적 권리를 표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봉쇄된다면, 이주민들의 의사 표출은 때로는 집단화되고, 폭력적이거나, 국제 연계적 형태를 띠고 진행되어 한 사회의 안보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개인적인 일탈인 범죄와 조직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외국인 체류자 중 가장 큰 집단인 중국동포와 증가하고 있는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인구의 증가와 집단화의 현상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문제를 파악하는 노력은 아직 초보적이다.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한 범주화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이주민 그룹이고 국민에 준하는 재외동포 자격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 청소년은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불안정한 체류신분으로 인해 설혹 스스로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용은 오로지 본인과 가족의 몫으로 돌아오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어 능력 부족, 문화적 격차, 교육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정상적인 직업교육이나 공교육 시스템에 진입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장기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다수를 중국동포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중국동포 청소년 정책은 인적 자원의 양성, 인간안보, 미래 한국 사회의 안정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들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쉽게 통합 및 동화되지 못하고, 나아가 국가 및 민족 정체성의 형성 위기로 인해 공동체로부터의 이탈 및 소외되거나 이로 인한 일탈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다면, 이민문제의 안보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불안정한 체류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정부의 다문화 외국인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때 미래 한국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할 가능성도 크다. 세계

각국이 국경 간 인적 자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이민정책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세대 인적 자원의 능력을 개발 육성하는 것은 미래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정책은 이민자의 인간안보 향상에 기여하고 안보문제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미래 국가 전략과 한-중 관계에서 중요하다. 다문화 및 이주민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에서 이들 귀환이주 중국동포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주요한 국가적 책무의 하나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곽재석 (2017).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동포와 체류정책 개선 과제.” 『한중커뮤니티 리더스포럼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pp. 59-75.
- 김아름·김영주·이선영 (2013). “한국어교육학 : 중국배경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어 습득과 학습자 변인 연구.” 『새국어교육』. 94권, pp. 469-498.
- 김나경·임채완 (2015). “베트남 귀환이주자의 인적 자본과 취업의 상관성 연구: 한국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5권. 1호, pp. 201-234.
- 김명숙·김성봉·김도영·허철수 (2012). “조선족 결혼 가정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 99-119.
- 김명정 (2011).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한 다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17권. 2호, pp. 55-76.
- 김관준 (2014).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 및 체류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재외한인연구』. 제32호, pp. 109-138.
- 김현미 (2012). “결혼이주여성들의 귀환결정과 귀환경험.” 『젠더와 문화』. 5권. 2호, pp. 113-145.
- 김혜련·임채완 (2015). “중국 귀환동포 정책의 특징분석.” 『China연구』. 제18집, pp. 35-62.
- 리화 (2014). “초국가적 자녀 양육으로 보는 조선족가족의 문화적 지속성과 변용.” 『중앙사론』. 제39집, pp. 77-109.
- 박봉수·김영순·최승은 (2013). “중국계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부모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열린교육연구』. 21권 2호, pp. 331-355.
- 방미화 (2013). “재한 조선족의 실천전략별 귀속의식과 정체성.” 『사회와역사』. 제 98집, pp. 227-257.
- 방성훈·김수현 (2012).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9권. 2호, pp. 39-68.
- 손영화·박봉수 (2015).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1권. 1호, pp. 75-102.
- 오성배·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권. 2호, pp. 517-552.
- 우영숙·이나영 (2013). “‘조선족’ 기혼여성의 초국적 이주와 생애과정 변동: 시간성

- 과 공간성의 교차 지점에서.” 『한국사회학』, 47권, 5호, pp. 139-169.
- 윤명숙·조혜정·박수영 (2012). “연변 조선족 청소년들이 부모와 별거기간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4권, 1호, pp. 113-137.
- 윤인진·김희상 (2016). “재외동포 귀환이주민 공동체의 형성과 현황.” 『한국민족문화』, 60권, pp. 37-81.
- 윤진희·권오규·마강래 (2014). “서울시 중국국적외국인의 주거지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 2호, pp. 39-54.
- 이규용 (2017). 『한중커뮤니티 리더스포럼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 이석준·김경민 (2014). “서울시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15권, 4호, pp. 1-16.
- 이은정 (2015).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귀환이주 - 대구지역 고려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8권, 1호, pp. 219-249.
- 이진영 (2011). “재외동포정책.” 정기선 엮음.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pp. 277-321.
- _____ (2012). “런던의 코리아타운: 형성, 구조, 문화.” 『재외한인연구』, 제27호, pp. 177-211.
- 이창호 (2012). “한국화교의 ‘귀환’이주와 새로운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45권, 3호, pp. 153-198.
- 이정은 (2012). “외국인과 동포사이의 성원권 -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에 따른 성원권 획득 전략.” 『경제와 사회』, 96호, pp. 402-429.
- 이춘호 (2014). “재한중국동포의 정체성의 정치: 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21권, 3호, pp. 143-180.
- 이혜경·이진영·설동훈·정기선·이규용·윤인진·김현미·한건수 (2016). 『이민정책론』. 박영사.
- 임채완·선봉규 (2015). “한국귀환이주 고려인 임금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직무만족관계분석.” 『재외한인연구』, 제35호, pp. 199-228.
- 정혜원·김명숙·임원선 (2011). “중국조선족 농촌 결혼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1호, pp. 323-338.
- 한상돈 (2013). “중국 농촌의 유수(유수)소년문제와 대책.” 『소년보호연구』, 제21호, pp. 187-218.
-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2017). 『한중커뮤니티 리더스포럼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중커뮤니티리더스포럼.

- Dustmann, C. and Y. Weiss (2007). "Return Migration: Theory and Empirical Evidence from the UK."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45. No. 2, pp. 236-256.
- Human Security Unit of UN (2009). *HUMAN SECURITY IN THEORY AND PRACTICE: An Overview of the Human Security Concept and the United Nations Trust Fund for Human Security*. New York: Human Security Unit of UN.
- Tsuda, Takeyuki (2016). "Why does the Diaspora Return Home? The Causes of Ethnic Return Migration." *Challenges of Diaspora Migration*. London: Routledge, pp. 25-41.
- 李振翎·朴星海 (2014). "朝鮮族跨國人口流動與留守兒童教育問題." 『困惑與反思: 朝鮮族基礎教育的現實境遇與未來抉擇』, 延吉: 延邊教育出版社, pp. 166-180.

2. 기타

- 교육부 (2015). 『2015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교육부 보도자료.
- 김경준·김태기 (2015). 『미래인재 개발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 김관준 (2016). "재한 중국동포 자녀 교육 실태와 중국과의 교육 협력." 『양안관계 변화와 한국 내 화교 화인; 통일과 민족문제』.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학술회의 보고서.
- 류방단·오성배·박균열 (2011).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정책방안』.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설동훈 외 (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방안-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 자녀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 성상환·김명정·배화순·이윤주 (2010).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교육과학기술부 연구보고서.
- 양한순·박우·예동근·강주원 (2013).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서울시 연구보고서.
- 여성가족부 (2016). "제1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자료."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포럼 (2013). 『제2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변화된 다문화가족 진단 및 정책과제 도출』.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포럼 보고서.
- 오성배·김경미·김재우·서덕희·오정은 (2013).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재분·김혜원·오성배·이해영·노경은 (2009). 『대안학교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사례, 학교에서의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실태 및
요구 조사』. 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이진영·장안리·김관준·임영언·정호원·성일광 (2015).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정책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장명선·송연숙 (2011). 『서울시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과 지원방향』. 서울시 여성가
족재단 연구보고서.

조혜영·문경숙 (2007). 『한민족 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
축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2016). 내부 통계자료.

행정자치부 (2015). 『2015 외국인주민현황조사 결과보고』. 행정자치부.

“선생님 말 텅부동?, ‘대림동 소학교’의 고군분투.” 『노컷뉴스』. 2015년 4월 28일.

“‘지하철 보관함에 돈 넣어라’ 보이스포싱에 10대 동원.” 『컨슈머타임스』. 2015년 2
월 1일.

“2017년 1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통계월보』. 2017년 1월.

“보이스포싱 알바로 전락한 중동포 청소년들.” 『한국일보』. 2016년 3월 29일.

“중국동포 청소년 전문 대안학교 11일 문 연다.” 『연합뉴스』. 2015년 11월 6일.

“학생 10명 중 7명이 중국동포… 대동초등학교를 아시나요?” 『헤럴드경제』. 2015
년 3월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2017년 2월 3일 검색)

행정자치부. <http://www.moi.go.kr>. (2017년 2월 3일 검색)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 <http://www.stats.gov.cn>. (2017년 2월 3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7년 02월 20일 |
| 논문심사일 : 2017년 02월 26일 |
| 게재확정일 : 2017년 03월 12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4 No. 1 (2017)

**Return Migration and Human Security:
Return Migration of Korean-Chinese Youth
and its Implications**

Jean Young Lee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Inha University)

Jae Seok Kwak

(Graduate School of Policy Science, Inha University)

Recently, population of return migration to Korea, particularly Korean-Chinese youths aged between 9 and 24, are rapidly growing due to the policy changes of the Korea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2015, population of the youths who have backgrounds of China reached 81,951 which was constituted over 40 percents of foreign youths. Although the number is growing more significantly from the last year, it is difficult to see proper institutions and legal aids for them either by the official schooling system or by societal support institutions such as NGOs. However, they have rights to receive a proper education not only as migrants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security, but also as the descendants of the overseas Koreans for whom the Korean government has a preferential treatment policy. Reality is, however, very different; most the youths are outside the schooling system. This can be negative effects to the integr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Or, this may develop to the securitization of immigration issue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epare precautionary measures for the Korean-Chinese youth returnees. As far as the number of the Korea-born youths are dwindling, rapidly

growing Korean-Chinese youth returnees are important for the future of Korea.

- Key words: Return Migration, Human Security, Korean-Chinese, Youth, Overseas Koreans